

## 2026년도 제1회 창녕우체국 상시계약집배원(공무직) 채용 공고

창녕우체국에서 우편물 수집 및 배달, 기타 부대 업무를 담당할 상시 계약집배원(공무직)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7. 14.

창녕우체국장

### 1. 채용 직종 및 인원

| 채용직종             | 인 원   | 근무예정부서<br>(근무지역) |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상시계약집배원<br>(공무직) | 일반 1명 | 창녕영산우체국          | - 우편물 수집 및 배달<br>- 기타 부대업무 |    |

### 2. 근무 조건

○ 신 분 : 공무직 근로자(비공무원)

\* 최초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,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
○ 보 수 : 월 2,016,880원

\*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시 개정된 급여 기준 적용

- 기본연봉 : 기본급, 운전수당, 근속수당, 상시집배특별수당, 정액급식비

- 기타수당 : 가족수당, 명절보로금, 경평상여금 등

- 실적수당 : 연장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, 상시출장여비 등

- 기 타 : 사회보험 가입, 맞춤형복지제도,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

○ 근무시간 : 주 5일(평일 월~금 또는 화~토)

- 1일 8시간 근무(08:00~17:00 탄력적 운용, 휴게시간 1시간 포함)

- 초과근무시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(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)

○ 휴 가 : 연차유급휴가, 공무유급휴가, 특별유급휴가 등

○ 집배 업무 특성

-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가 필요하며, 1,000여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0kg상당(최대30kg)의 다량의 소포를 자동이륜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 배달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

### 3. 응시 자격

- 가. 최종시험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
- 나.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·성실한 자
- 다.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(근무상한 연령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#### 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## 「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62조(근무상한 연령)

- 공무원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.
-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.

- 라.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(복수국적자 및 외국인은 제외) 이고  
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·울산·경남지역 거주자(단, 출·퇴근이 가능한 자,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는 응시 불가)

마. 최종시험일(면접일) 현재 「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」와 함께 「제2종 소형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」 동시에 소지하고 차량 및 자동이륜차 운전이 가능한 자

※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중 “J조건 제외”

바.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

※ 위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

#### 4. 시험 방법

| 채용분야 \ 시험단계 | 제1차 시험 | 제2차 시험 | 제3차 시험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공무직         | 서류전형   | 실기시험   | 면접시험   |
| 상시계약집배원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
가. 제 1차 시험 : 서류전형 (소극적 전형)

○ 응시자의 자격요건,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·부적격 여부만을 판단

나. 제 2차 시험 : 실기시험

○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 검정

- 체력 검정(2종목) : 팔굽혀펴기, 윗몸일으키기 등 검정 항목 기재

- 검정기준표 : 붙임참조

- 체력 검정 면제 : 「국민체력 100」 인증서\*(3등급 이상) 제출자

\*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후 발급하는 인증서(무료)

※ 실기시험에서 탈락할 경우 면접시험에 참가할 수 없음

다. 제 3차 시험 : 면접시험

○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※ 평가요소 :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과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

## 6. 응시서류 접수

가. 모집공고 : 2026. 7. 14.(화) ~ 2026. 7. 21.(화)

나. 응시원서 접수기간 : 2026. 7. 14.(화) ~ 2026. 7. 21.(화) 18:00까지

다. 원서교부 :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

라. 접수방법 : [고용24 홈페이지\(www.work24.go.kr\)](http://www.work24.go.kr)에서 **온라인 접수**

※ 온라인 접수방법은 고용24 콜센터(1577-7114) 문의

※ 최종 접수 여부는 마이페이지 - 입사지원 관리 - 알선/입사지원 내역에서 반드시 확인,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
마. 구비서류 첨부 : 온라인 접수시 PDF · JPG 파일(성명\_서류명) 첨부

또는 등기우편 · 전자우편 제출(온라인 첨부가 어려울 경우)

※ 등기우편 제출

- 접수처 : 경남 창원군 화왕산1로 41 창녕우체국 우편물류과 2층 채용담당 앞

**구비서류 재중** 우편번호 : 50329

- 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,

반드시 **익일특급 등기우편**으로 접수(응시자는 접수유무를 확인)

※ 전자우편 제출 : tax60003500@korea.kr

※ **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함**

## 7. 제출서류

가. 이력서 1부【붙임1】

나. 자기소개서 1부【붙임2】

다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【붙임3】

라. 범죄경력 부존재 확인서 1부【붙임4】

마. 운전경력증명서(경찰서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 발급) 1부

- 면허발급이후 **전체기간**의 운전면허경력, 법규위반, 교통사고 내역이 나타나도  
록 조회된 증명서 (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)

바. 주민등록초본 1부(**최종합격자에 한함**)

- **주소변동 이력이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하여 발급**

사. 「국민체력 100」 인증서(3등급 이상) 1부(해당자에 한함)

※ 「국민체력 100」 인증서는 실기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취득분을 실기시험

전까지 제출할 경우 실기시험이 면제됩니다.

※ 각 서류는 공고일(2026.7.14.)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, 누락(미비사항)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.

※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,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
## 8.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

가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6.7.23.(목)

나. 실기 및 면접시험 : 2026.7.29.(수)

다. 최종합격자 발표 : 2026.7.29.(수) 16:00 이후

라.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창녕우체국 홈페이지에 게시

마. 실기·면접시험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

※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을 지참하고 실기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 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

※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9. 기타사항

가.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3일 전까지 창녕우체국 홈페이지(<http://www.koreapost.go.kr/635/>)에 변경 공고합니다.

나.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,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(결격사유)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
○ 만일,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다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
-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창녕우체국에 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  -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거창우체 방문신청, 팩스(0505-005-1593) 또는 이메일(tax60003500@korea.kr),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
  - 창녕우체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- 라. 상시계약집배원(공무직)은 비공무원이며,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,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.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,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- 마. 상시계약집배원(공무직) 근무경력은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됩니다.
- 바.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(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) 같을 경우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사.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를 기재하시기 바라며,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아. 실기시험 실시 중에 발생하는 인적 피해 및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 자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녕우체국 우편물류과(055-806-112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